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8.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장애인 재활치료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사업을 담당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센터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주요골자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설정함. (안 제4조)
2. 가급적 많은 재가 장애인이 이용토록 치료 및 이용에 드는 최소비용만을 징수하여 사용료 부담을 경감토록 함. (안 제7조)
3.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공익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 (안 제8조)
4. 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운영원회를 7-1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함. (안 제11조)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잠재능력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치) 복지관의 위치는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3번지에 둔다

제 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 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4.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구 및 인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구성 및 인력 배치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 7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또는 부모 및 자녀
2. 의사상자보호법 제3조의 의사상자 본인 또는 가족
3. 기타 생활이 곤란하거나 공익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법인등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에 복지관운영 목적에 가장 합당한 수탁자를 지정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복지관이용 수수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계약에 의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직제 및 인원배치 기준 또는 이용에 따른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승인을 요구해야한다.

⑤ 수탁자는 익년도 사업계획을 연도 개시 5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하며, 자체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관 운영의 사업목적을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탁 운영시에는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된다.

③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사업학계 또는 장애인복지관계인사

2. 행정기관의 사회복지담당 관리직 공무원
3. 교육기관의 관리직 공무원 및 의료관련 교수
4. 시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또는 전직 의원
5. 당해 복지관의 관장
6. 기타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민간 단체 인사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실적
2.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3. 제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3조(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중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파주시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복 지 관 이 용 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	
		생활보호 대 상 자	일 반
물 리 치 료	1인1개월	무 료	20,000
작 업 치 료	1인1개월	무 료	20,000
언 어 치 료	1인1개월	무 료	20,000
조 기 교 육	1인1개월	무 료	20,000
직 업 훈 련	1인1개월	무 료	20,000
청 각 언 어	1인1개월	무 료	10,000
장애인자녀유아교육	1인1개월	무 료	10,000
심 리 치 료	1인1개월	무 료	20,000
심 리 검 사	1회	무 료	3,000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

□ 운영목적

-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 개발과 기능을 회복시키며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및 조사분석을 실시해 지역 내에서의 장애인 복지증진 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 건립개요

- 위 치 :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428-3
- 부지면적 : 1,200m² (주내자육원에서 기부채납)
- 건물규모 : 1동 2층 1,026m² (310평, 지상 1층, 지하1층)
- 복지관 유형 : “다”형 (장애인복지법 제38조2항 관련 최소 기준)
 - ※ 다형 기준 : 건축물연면적 : 1,000m² - 1,500m²
- 주요시설
 - 지상 1층(519m², 155평) : 조기교육실, 상담실, 의무실, 회의실, 사무실,
 - 지하 1층(519m², 155평) : 직업훈련실, 작업치료실, 의료재활실, 식당
- 공사추진 현황
 - '97. 2. 부지선정
 - '97. 8. 공사착공
 - '97. 12. 동절기 공사중지
 - '98. 3. 완공
 - '98. 4.21 개관예정 (※ 장애인의 날)

□ 직제 및 운영

- 관리 및 운영요원 : 22명 (관장, 1 사무장, 1 직원 20)
- 직제 및 업무분장 계획 : 1개부 3과
 - 총무기획과 : 인사관리, 예산회계, 사업 기획 및 분석평가
재가장애인 방문상담·치료 및 행사지원등
 - 사회교육과 : 심리평가 및 지도, 사회적응교육등
 - 재활교육과 : 장애진단 및 치료, 직업훈련, 물리치료등
- 직원채용 : 공개경쟁 채용 원칙
※ 전문직 채용등 특별한 경우 심의를 거쳐 특별 채용
- 보수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장애인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
- 재무회계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보건사회부령 제922호) 적용
- 운영방법 :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 운 영 비 : 국도비 보조 (국비 40%, 도비 60%, '98년: 294,303천원)
※ 지방자치단체 직영시 : 전액 시부담
- 비영리공익법인 위탁운영시 : 20% 법인부담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재가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복지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위 원 수 : 7 - 12 명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전문가로 위촉)
- 위 촉 : 파주시장
- 심의사항 : 예산 및 결산심의, 제 운영규정 제정등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 심의
- 기타사항 : 위탁운영시 수탁법인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위촉
- 수당지급 : 위원회 참석시 위원당 1회에 5만원씩 지급

□ 복지관 이용료 징수

- 징수목적 : 복지관 이용에 따른 실비부담 및 이용자의 참여 의식
- 징수방향 : 생활보호대상자 (1,2종)는 전액 무료 이용케하고
기타 이용자는 종목별로 정해진 이용료 징수
- 징수금액
 - 청각언어 및 장애인 자녀교육 : 월 10,000원
 - 물리치료등 기타 : 월 20,000원

□ 향후추진계획

- '98년도 사업비 확보 및 시설장비 구입
- 복지관 위탁운영 주체 결정
- 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
- 복지관 개관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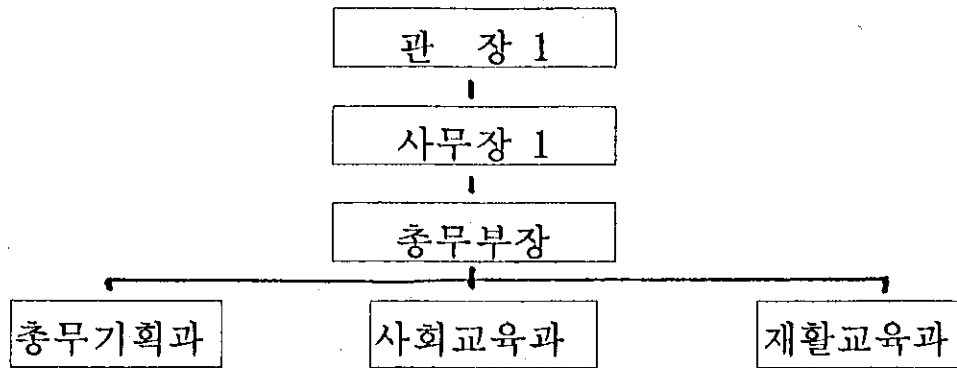
장애인종합복지관 정원 및 임용 주요자격기준

구 분	정원 (명)	직책	주 요 자 격 기 준
계	22		
관 장	1		·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8년이상 경력자 · 장애인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등
사무국 장	1		·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6년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장애복지분야에서 6년이상 경력자
1급	1	부장	·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장애복지분야에서 4년이상 경력자
2급	3	과장	· 4년제 대학졸업후 장애복지분야에서 3년이상 경력자 ·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증이 있는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3급	4	주임	· 4년제 대학졸업후 사회복지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자 ·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자
4급	4	치료사, 간호사, 교사등	· 사회복지사등의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후 복지분야1년이상 경력자 ·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후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2년이상 경력자
5급	4	사무원, 안내원등	·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기능직	2	운전원, 보일러기사	·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소지자
고용직	2	청소원, 취사원등	· 해당분야 기능 숙련자

※ 기타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참조

조 직 및 직 제

1. 조직



2. 작제 (부서별 업무)

부 서 명	분 장 업 무
총무기획과	○ 조직 및 인사관리와 서무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경리 및 회계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타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기획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 지역내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 재가장애인에 대한 행사지원
사회교육과	○ 종합상담, 심리, 평가, 판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자원개발사업 ○ 보장구 사용, 사회적응훈련,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활동에 관한 사항 ○ 사회교육, 계몽활동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재활교육과	○ 장애진단 및 신체적 판정과 적절한 의료지도 ○ 물리치료, 작업치료등 각종 의료적 서비스 제공 ○ 기능훈련과 기술훈련의 실시 ○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 작업장 운영 및 새로운 직종개발에 관한 사항

복 지 관 이 용 료 비 교

단위:원

구 분	기 준	이 용 료		비 고
		파주시	부천시	
물 리 치 료	1인1개월	20,000	15,000	
작 업 치 료	1인1개월	20,000	15,000	
언 어 치 료	1인1개월	20,000	15,000	
조 기 교 육	1인1개월	20,000	15,000	
직 업 훈 련	1인1개월	20,000	15,000	
청 각 언 어	1인1개월	10,000	5,000	
장애인자녀유아교육	1인1개월	10,000	5,000	
심 리 치 료	1인1개월	20,000	20,000	
심 리 검 사	1회	3,000	2,000	
기 타 이 용	1회	3,000	-	

-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용료 전액 무료
- 성남시 및 평택시 사용료 전액 무료

●障礙人福祉法(1939・12・30)
法律第4179號全文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障礙人對策에 관한 國家, 地方自治團體 등의 義務를 명백히 하고 障礙發生의 豫防과 障礙人의 醫療・訓練・보호・敎育・雇傭의 增進・手當의 支給 등 障礙人福祉對策의 基本이 되는 事業을 정함으로써 障礙人福祉對策의 綜合的 추진을 도모하며, 障礙人의 自立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障礙人의 生活安定에 기여하는 등 障礙人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障礙人”이라 함은 肢體障礙, 視覺障礙, 聽覺障礙, 言語障礙 또는 精神遲滯 등 精神的 缺陷(이하 “障礙”라 한다)으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자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第3條 (개인의 尊嚴 등) ① 障礙人은 개인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處遇를 받는다.

② 누구든지 障礙를 이유로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障礙人에게는 國家・社會를 구성하는 一員으로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기타 모든 분야의 活動에 참여할 機會가 보장된다.

第4條 (自立에의 노력) ① 障礙人은 그가 가지고 있는 能力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社會・經濟活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障礙人의 家族은 障礙人의 自立促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國家, 地方自治團體와 國民의 責任)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礙의 발생을 豫防하고, 障礙의 早期發見에 대한 國民의 關心을 높이고 自立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障礙人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 모든 國民은 障礙發生의 豫防, 障礙의 早期發見과 障礙人의 福祉增進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6條 (障礙人福祉委員會) ① 障礙人福祉에 관한 사항을 審議・建議하기 위하여

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施設의 構造, 設備의 整備등에 관하여 적절한 配慮가 되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道路・公園・公共建物・交通施設・通信施設・共同住宅 기타 公衆이 이용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障害人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施設이나 設備을 갖추어야 한다.

③第2項의 施設이나 設備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福祉實施機關은 第3項의 施設이나 設備의 基準에 미달하는 施設이나 設備을 設置한 者에게 이의 是正을 요청할 수 있다.

⑤第4項의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4條 (生計補助手當)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害의 정도가 심하여 自立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障害人에 대하여 生計補助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計補助手當 支給의 대상・基準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手話 및 字幕)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放送局의 長으로 하여금 뉴스, 國家的 主要事項의 中繼等 放送프르에 聽覺障害人을 위한 手話 또는 字幕을 放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을 받은 放送局의 長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6條 (再活의 研究)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害人再活의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調査・研究 및 評價를 실시하기 위하여 再活專門研究機關에 障害豫防・醫療・教育 및 職業再活등에 관한 研究課題를 選定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研究課題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4章 障害人福祉施設

第37條 (障害人福祉施設) 障害人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障害人再活施設: 肢體障害, 視覺障害, 聽覺障害, 言語障害, 精神遲滯등 등일 또는 유사한 障害를 가진 障害人을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그 再活에 필요한 相談・治療 또는 訓練을 행하는 施設

2. 障礙人療養施設：障礙人으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者를 入所하게 하여 相談・治療 또는 療養을 행하는 施設
3. 障礙人有料福祉施設：障礙人에게 相談・治療・訓練 또는 療養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費用을 入所 또는 通院한 者로부터 收納하여 운영하는 障礙人再活施設과 障礙人療養施設
4. 障礙人利用施設：無料 또는 低廉한 料金으로 障礙人을 通院하게 하여 相談・治療・訓練・社會와의 交流促進 및 餘暇活用등의 편의를 綜合的으로 제공하는 施設
5. 障礙人職業再活施設：障礙人을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職業을 주어 自活시키는 障礙人勤勞施設과 就業이 곤란한 障礙人에게 필요한 訓練을 행하여 職業을 주는 保護作業場
6. 點字圖書館：無料 또는 低廉한 料金으로 視覺障礙人에게 點字刊行物 또는 錄音書를 閱覽하게 하는 施設
7. 點書 및 錄音書 出版施設：無料 또는 低廉한 料金으로 視覺障礙人에게 點字刊行物 및 錄音書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出版하는 施設

第38條 (障礙人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은 市・道知事の 許可를 받아 障礙人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③障礙人福祉施設의 設置基準과 設置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39條 (廢止 또는 休止)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이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障礙人福祉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0條 (受託義務) 障礙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第20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障礙人의 入所・通院 또는 이용을 受託받은 때에는 正當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41條 (監督)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障礙人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 기타 書類를 檢査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1991. 6. 3) (보건사회부령제868호전문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로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진결과를 검진을 의뢰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수첩의 교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장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애인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장애인이 교부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뒹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첩을 재교부 받은 후 잃어버린 수첩을 찾은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수첩의 반환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2.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목록 각 1부
3.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외에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법인의 정관 및 제 1항제 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 2항 내지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설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등) 법 제3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8조 (장애인의 시설입소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그 시설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용의 수납)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법 제4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에 입소·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비용수납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 ①법 제50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2. 제조·수리를 담당할 직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별표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제37조관련)

1. 공통기준(특수도서관·점서 및 녹음서출판시설을 제외한다)

가. 시설을 장애인의 분포상태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상시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장애 종류별·성별·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세미만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의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증영아시설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은 출입구·통로·거실·변소·사무실·의무실·상담실·도서실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용을 하지 않는 시설에 있어서는 (가)·(마)·(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거 실

①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거실의 면적은 복도·다락등을 제외한 피수용자 1인당 5세미만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이상, 5세이상의 경우에는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5세미만의 경우에는 15인이하, 5세이상의 경우에는 8인이하로 한다.

⑤ 7세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야간에 거실간의 통로는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의무실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생활지도원	진 자
	(2) 제 1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교육학・사회사업학 또는 사회복지학등 장애인복지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제 1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바. 다른 장애인재활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별 기준

가. 설 비

공통기준에서 정한 기준외에 각 시설별로 아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기 준
(1) 장애인 재활시설	(가) 지체장애인재활시설
	①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트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등 각각 필요한 설비와 지체장애인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구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운동장・모래밭・경사지등 옥외 기능회복훈련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출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복도・목욕실 및 변소에는 손잡이를 달아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각장애인재활시설
	① 재활사업별트 그 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옥외 운동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계단등 위험한 곳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승강구・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촉감으로 알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2층이상 건물의 피난설비는 활강식으로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청각・언어장애재활시설
	①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직업훈련용 기계

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능한한 청능훈련실・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험등을 할리기 위한 유색표지등 필요한 설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타) 정신지체인재활시설

①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증의 정신지체인을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1인용 거실 및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
요양시설

(가) 필요에 따라 1인용 또는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특별지도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중증장애인의 요양에 필요한 보건위생상의 특별배려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유료복지
시설

장애인재활시설 및 장애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면회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
이용시설

(가) 건축물연면적

① 가형 : 2,000제곱미터이상

② 나형 : 1,5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

③ 다형 : 1,000제곱미터이상 1,500제곱미터미만

(나) 필수설비

장애인 이용시설에는 적정규모의 다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강당 또는 회의실

② 자원봉사자실

③ 상담실

④ 의무실 또는 진료실

⑤ 직업훈련실

⑥ 의료재활실

⑦ 화장실

(2)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재활시설 및 장애인요양시설의 기준과 같다.

(3) 장애인 이용시설

(가) 관리및 운영요원 배치기준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가형	나형	다형	
계	35명	30명	27명	
관 장	1	1	1	
사무장	1	1	1	
1급	3	3	2	● 부 장
2급	5	5	3	● 과 장
3급	6	5	5	● 주 임
4급	8	5	5	● 치료사·간호사·교사등
5급	6	5	5	● 사무원·안내원 등
기능직	2	2	2	● 운전원·브일러 기사
고용직	3	3	3	● 청소원·취사원·세탁원등

(나) 자격기준

직급별	자 격 기 준
	일 반 직
관 장	○ 6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이 있는 자로 해당분야에서 8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장애인복지분야에서 8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사무장	○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6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과장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1 급 (부장)	○ 7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후 4년이상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대리급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일 반 직	전 문 직
2 급	○ 8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과장으로 재직하거나 대리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르사등 관련자격 취득후 3년이상 장애인 복지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급	○ 8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4급상당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졸업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2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르사등 관련자격취득후 2년이상 장애인복지관련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후 2년이상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있는 자	○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4 급	○ 9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부투자기관의 5급상당으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4년제대학 졸업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등 자격소지자 ○ 4년제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5 급	○ 9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고졸 또는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기능직	○ 해당 기능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소지자(운전·타자·열관리·전산등)	

3. 시설운영의 기준

가. 입소자의 요건

-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다른 장애인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 (2)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 (1) 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두고 의사·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 (3)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4)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